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21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임호선 · 박선원 · 강경숙
북기왕 · 윤준병 · 진성준
임미애 · 이상식 · 문대림
이정문 · 이연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부상”을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지급을”을 “및 치료비 지급을”로 한다.

②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u>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u> <u><신 설></u>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 ----- ----- ----- <u>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u>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u>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u> ③ -----제1항 및 제2항에-----및 치료비 지급을-----.